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시험 | 인카금융서비스

제4회 모의고사 정답 해설 | 점수 :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②	③	②	①	④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③	④	④	①	④	③	③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③	③	③	②	①	③	③	③	②	②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④	④	④	②	③	③	①	④	②	②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③	①	①	④	③	④	④	④	②	③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③	③	④	①	④	③	③	④	①	③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③	③	①	①	②	④	②	①	②	②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④	④	②	④	②	①	④	①	①	②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①	②	②	②	③	③	①	①	③	①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②	④	③	④	③	②	③	③	②	②

제1과목 투자권유 법규(금융소비자보호법 포함) [13문항]

1. ②
직접성이 아니라 간접성의 속성이 있다.

2. ①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위탁자)와 신탁업자(수탁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3. ②
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4. ③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는 신탁업자의 업무이다.

5. ②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6. ①
자산의 운용·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은 신탁계약의 중요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7. ④
① 사모의 경우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예비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 전,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 전·후 사용이 가능
③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는 원칙적으로 내용은 같으나 그 교부목적은 다르다. 증권신고서는 발행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의 수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며 투자설명서는 투자권유를 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8. ②
MMF의 경우 무위험수익률에 가까우므로 자기거래를 해도 투자자 피해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투자자 편의를 위해서 자기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9. ③
투자신탁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에 대해서 환매를 연기할 경우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일부자산을 현물로 납입하여 설정·설립하게 된다.

10. ④
적격 연락책임자(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회계법인 등)를 국내에 두어야 한다.

11. ③
대리인에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 여부는 **본인 기준,** 설명의무 이행여부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12. ④
전문금융소비자에게 사전 안내가 불가한 상품은 장외파생상품만 해당된다.

13. ③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계약체결 제한·금지를 할 수 있다.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토마토패스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과목 직무윤리 · 투자자분쟁예방 [14문항]

14. ④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는 모두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15. ④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권리의 남용이 되어 권리행사의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의칙 위반은 강행법규의 위반이 된다.

16. ①
직무윤리의 2대 원칙은 '이해상충 방지의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의 2가지 법률상 의무로 구체화된다.

17. ④
이해상충 수준을 낮출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회피하여야 한다.

18. ③
주의의무는 그 업무가 신임관계에 있는 한 사무처리의 대가가 유무상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19. ③
① 상품개발단계
② 상품 판매 이전 단계
③ 상품 판매 단계
④ 상품 판매 이후 단계

20. ③
과당매매는 이해상충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1. ③
'중요한 사실'은 빠짐없이 모두 표시해야 하며(표시방법은 문서·구두를 불문함). 중요하지 않은 사항의 경우 투자자 이익에 부합할 경우 알리지 않아도 된다.

22. ③
③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손실보전금지의 예외사항
(1) 회사가 자신의 위법 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2)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3)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23. ③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동의를 받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활용하여야 한다

24. ②
① 기록여부, 매체여부에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③ 퇴직예정 임직원 등은 회사 업무와 관련한 정보는 고객정보를 포함하여 모두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비밀정보의 판단여부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이다.

25. ①
예고 없는 언론 인터뷰 등 불가피한 경우 언론기관 접촉 후 즉시 보고하는 등 예외적으로 추인받으면 된다.

26. ③
금융 관련 기관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금융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도 금융 분쟁에 해당된다.

27. ③
일임매매는 자본시장법령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되나, 임의매매는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

제1과목 펀드영업실무 [8문항]

28. ③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29. ②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30. ②
①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가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31. ④
① 거치식은 동일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없다.
② 적립식은 저축기간 중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③ 목표식은 저축목표금액의 감액 또는 증액이 가능하다.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토마토패스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2. ④
거치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33. ④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이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34. ②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

35. ③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나머지는 지방세이다.

제1과목 투자권유 [15문항]

36. ③
단순한 상품설명, 특정상품의 매매나 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상담 및 안내는 투자권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7. ①
투자권유를 하기 전 투자권유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8. ④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로 인한 과거 성과는 고지대상이 아니다.

39. ②
온라인으로 펀드를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 및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에 구축해야 된다.

40. ②
금융소비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의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자 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표'의 위험도 분류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41. ③
투자권유 요청을 받고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2. ①
투자권유 시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 측면, 투자자의 경험 및 인식능력 등을 고려하여 설명한다.

43.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4. ④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보부터 **12~24개월**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5. ③
고령투자자는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46. ④
환위험헷지가 모든 환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

47. ④
판매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분류 시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다른 상품과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할 수 있다.

48. ④
고객이 요청이 있으면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방문판매를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49. ②
① 법인은 투자권유대행인이 될 수 없다.
③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 투자권유할 수 없다.
④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50. ③
금융기관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기존 고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2과목 펀드의 구성·이해 [16문항]

51. ③
1/5가 아니라 1/10이다..

52. ③
투자회사는 펀드설립비용, 이사회 개최비용 및 유지비용, 임원보수 등의 측면에서 투자신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서 국내 대부분의 펀드는 투자신탁 형태로 설정되고 있다.

53. ④
증권의 형태라도 그 내용이 부동산(특별자산)인 자산에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면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된다.

54. ①
MMF는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안전성 강화차원).

55. ③
공모형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므로 기준가격 공시의무는 면제된다.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토마토패스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56. ③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엄브렐라펀드)에 대한 설명이다.

57. ③
모자형펀드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이 되었으나 재간접펀드의 경우 운용능력의 아웃소싱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8. ④
ETF는 일반펀드와 달리 의결권을 중립투표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59. ①
공·사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①에 추가하여 의결권제한이 있다.
※ 사모집합투자기구 개편(2015.10.) : 종전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 개편되었다.

60. ③
최대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펀드를 **주식혼합형**, 최대주식 편입비율이 50% 미민인 펀드를 **채권혼합형**으로 분류한다.

61. ③
일반상품은 보관·운송·평가·유동성 등이 측면에서 펀드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여 과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하에서 거의 개발되지 못하였다.

62. ③
충실의무란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수익자를 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무이다.

63. ③
위탁자가 자산운용권한을 갖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할지라도, 위탁자의 필요에 따라서는 신탁회사에게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64. ①
파생상품 등의 투자에 대한 '적정성의 원칙'은 신탁을 통해서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65. ②
개발(토지)신탁에 대한 설명이다.

66. ④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면제한다.

제2과목 [펀드투자] 펀드평가 [4문항]

67. ②
판매회사는 펀드의 가입과 환매를 담당하고 실제 펀드 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8. ①
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대형주 및 중소형주 편입비율에 따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분류한다.

69. ②
트래킹 에러가 **작을수록** 펀드가 투자한 종목의 구성이나 편입비율이 벤치마크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70. ②
성과 측정기간이 짧으면 성과가 펀드운용자의 능력 이외에 운 등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과 측정 기간은 충분히 잡는 것이 좋다.

제2과목 [펀드투자] 펀드의 투자관리 [10문항]

71. ④
자산배분과 간접투자는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72. ④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73. ②
전략적 자산배분은 3년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대개 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하고, 전술적 자산배분은 1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여 고객과 자본시장의 변화를 전략에 반영한다.

74. ④
전략적 자산배분의 대표적인 전략은 인덱스 전략, 전술적 배분의 대표적인 전략은 스타일 전략이다.

75. ②
위험-수익 최적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76. ①
자산집단의 투자성과와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벤치마크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77. ④
㉡, ㉢은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에 해당한다.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토마토패스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78. ①
②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을 얻거나, 기대수익에 비해 낮은 위험을 부담하도록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수정한다.
③ 많은 경우 높은 성과를 지닌 자산을 식별하는 것보다 큰 손실을 가져다 주는 자산을 식별하여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④ 자금의 재배분을 통해 자본이득의 가능성이 사라진 주식에서 앞으로 그 가능성이 큰 주식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은 리밸런싱에 대한 설명이다.

79. ①
하나의 자산집단은 다른 자산집단과 상관관계가 충분히 낮아 분산투자 시 위험 감소효과가 있어야 한다.

80. ②
기본적 분석에는 주식의 이익할인·배당할인·현금흐름할인 모형, 채권이 현금흐름할인모형 등이 있다.

제3과목 [부동산펀드] 부동산펀드 법규 [5문항]

81. ①
환매금지형 펀드에서 상장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투자회사'이다.

82. ②
새마을금고, 투자일임업자, 투자자문업자 등으로부터는 차입이 불가하다.

83. ②
부동산의 거래비용 및 수수료는 실사보고서 포함사항이다.

84. ②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은 본질업무로서 제3자에게 업무위탁이 불가하다.

85. ③

집합투자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펀드는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의 한도는 해당 부동산펀드의 **순자산액의 100%**로 한다.

제3과목 [부동산펀드] 부동산펀드 영업실무 [15문항]

86. ③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을 말한다. 이러한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에 의해, PF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의무에 대해 실질사업자의 부담은 없거나 제한적이다.

87. ①
호황국면에 대한 설명이다. 매도인은 거래를 미루려는 경향이 있고 매수인은 거래를 앞당기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88. ①
풋백옵션은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89. ③
대출형부동산펀드는 차입한 자금으로 대출을 할 수 없으므로 차입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90. ①
유치권은 담보불권이다.

91. ②
개량형부동산펀드에 대한 설명이다.

92. ④
일반적으로 일반인의 참여가 용이한 아파트나 토지 등은 입찰이 용이하여 낙찰가격이 상승하므로 경공매펀드의 수익률이 더 낮다.

93. ③
가치부가전략에 해당한다. 개량과 개발은 가치부가전략, 개발사업은 기회추구전략이다.

94. ④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시행사를 통한 신용보강이다.

95. ③
경공매형은 사전불특정형으로 운용되므로, 사전적으로 모집한 펀드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는 운용프로세스 및 운용메뉴얼이 중요하다.

96. ②
공실위험은 운용단계의 대표적인 위험이다.

97. ③
① 부동산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유사거래사례, 임대수익, 예상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임대형 부동산 매각시 위험이 가장 크다.
④ 건설 중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잔금비율을 높여 건축기간 중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을 최소화한다.

98. ③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다른 투자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진다면 시장요구자본환원율이 낮아지게 된다.

99. ②
운영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100. ②
개발형은 펀드자체가 시행사 역할을 하므로 우량한 시행사 선정 여부가 아닌 우량한 시공사 선정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토마토패스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토마토패스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